

| | | | | |
|-------|------------------------------------------|------------------------------------------------------------------------------------------------------------------------------------------------------------------|-----|--|
| 제 목 | 국 문 | 보건의료 초고속정보통신 관련법규의 정비방향 | | |
| | 영 문 | Legal aspects of healthcare information super highway | | |
| 저 자 | 국 문 | 채영문 ¹ , 이해종 ² , 이경환 ³ , 최형식 ¹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¹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²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³ | | |
| 및 소 속 | 영 문 | Young Moon Chae, Hae Jong Lee, Kyung Hwan Lee, Hyung Sik Choi Yonsei Univ.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Management | | |
| 분 야 | 보건관리 | 발 표 자 | 채영문 | |
| 발표 형식 | 포스터 | 발표 시간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2월 | | | |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최근들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관련된 법규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 원격진료 수가산정의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1) 초고속정보통신 관련법규 정비방향

위험요인분석(risk analysis): 보건의료 초고속정보통신 관련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나 시스템의 보안에 어떠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위험요인분석 (risk analysis)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경우를 예측하고 각각에 대해 원인의 규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결과는 관련 법제도와 보안관련 정보기술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보안관련 정보기술분석: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관련된 보안관련 정보기술을 정보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법제도의 정비방향: 위험요인 분석결과와 정보기술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고 국내외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초고속정보통신 관련법규의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2) 원격진료수가의 산정방향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원격진료 수사는 상대가치적도를 근거로 하여 설정한다.

의사서비스를 기술료와 진료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서 현지와 원격지간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적정진료수가를 구하고, 각 서비스에 따른 지역별 보정지수를 감안한 원격진료수가 산정모델을 제시한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1) 초고속정보통신 관련법규 정비방향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분야에 국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유럽에서와 같이 모든기관과 정보에 대해 다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규율할 것이나, 아니면 미국에서와 같이 의료분야에 관련 특별법으로 규율할 것이나 하는 것은 각 국가의 법률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국가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에서와 같이 강력한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산화된 진료기록의 증거가치: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 의하면 광디스크에 저장된 진료기록은 법적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산화된 처방전은 법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혼선이 있다. 광디스크에 의한 진료기록부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의료법에서도 광디스크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작성 내지 보존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경우 광디스크나 다른 전산매체에 의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보험관리공단과의 사적인 문제일 뿐 법원에서는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원격진료 수가의 산정방향

원격진료에 의한 진료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한 서비스라도 소요되는 재료의 종류와 양 및 질에서 차이가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대가치척도(RBRVS)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격진료수가는 직접진료를 담당하는 진료수가 (현지 1차진료료)에 다른 지역에서 제공되는 진료수가 (원격지 3차진료료)가 포함되어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지역별 보정지수를 가산시키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제시된 모델로 원격진료행위별 수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수가를 적용하는 시점이 향후 일정시간 이후에 적용할 수가라면 서비스의 구성 및 수량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정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수가항목의 신설여부로, 원격진료의 부가적인 진료부문만을 수가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수가항목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인지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③ 특정병원의 실제원가를 기초로 하여 수가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소요되는 원가를 기초로 하여 수가를 결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